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판 결

사 건 2026고단31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1.가.나. A  
2.가.나. B

검 사 진인동(기소), 김서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봉헌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심 담당변호사 김주장 (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6. 5. 27.

### 주 문

####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2호(갤럭시A23 1대, 조립식 PC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4,508,8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11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 유

### 범 죄 사 실

####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서 제공하고 있는 'D'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배포하면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정규 게임 서버가 아닌 사설 서버로 접속을 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어, 피고인 B는 사설 서버 접속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도메인 제작·관리, 접속 클라이언트 제작·제공, 전반적인 게임 서버 프로그램 제작·수정 역할을, 피고인 A은 'E' 접속기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홍보하고, 회원 관리, 공지사항 관리, 회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F상품권 편번호를 받아 상품권 업체를 통해 환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동의나 승인 없이 불특정 다수인인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개설한 사설 서버인 'E'를 이용하



도록 하면서 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3. 2. 5.경부터 2024. 8. 31.경까지 평택시 G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등에서 위 'D' 게임의 클라이언트를 개·변조한 사설 서버인 'E'에 접속할 수 있는 웹페이지 '(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고, 회원들에게 서버 업데이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디스코드 채널 '(인터넷주소 2 생략)'을 개설하여 게임 불특정 이용자들이 하여금 'E'에 접속하여 'D' 게임을 할 수 있게 제공하고,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F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고 게임아이템을 교환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08,219,800원을 수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회원들에게 제공하였다.

#### 나.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사설 서버를 개설하고, 위 게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한 다음 그 접속 링크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이용자들이 하여금 위 사설 서버에 접속하여 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복제·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제공하고 있는 'D'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배포하면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정규 게임 서버가 아닌 사설 서버로 접속을 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어, 피해 회사의 동의나 승인 없이 불특정 다수인인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개설한 사설 서버인 'H'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22. 9. 17.경부터 2024. 2. 16.경까지 불상지에서 위 'D' 게임의 클라이언트를 개·변조한 사설 서버인 'H'에 접속할 수 있는 웹페이지 '(인터넷주소 3 생략)'를 개설하고, 회원들에게 서버 업데이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디스코드 채널 '(인터넷주소 4 생략)'을 개설하여 게임 불특정 이용자들로 하여금 'H'에 접속하여 'D' 게임을 할 수 있게 제공하고,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F상품권 편번호를 제공받고 게임아이템을 교환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4,405,000원을 수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회원들에게 제공하였다.

#### 나.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사설 서버를 개설하고, 위



게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한 다음 그 접속 링크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이용자들이 하여금 위 사실 서버에 접속하여 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작권을 복제·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A 계좌 총좌 총입금액 특정 - 'I' 등), 수사보고서(A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A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촬영한 PC 및 휴대전화 내 관련 자료 촬영본 분석, 피의자 진술 등 - B 관련), 수사보고서('E' 운영기간 및 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H', 'J' 서버 채증 자료 첨부 - 게임물관리위원회), 수사보고서(피의자 B 범죄수익금 특정)

### 1. 압수조서, 압수목록

##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E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E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H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H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의 점)
-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E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저작권법 제136



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E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정

○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피고인이 미승인 게임물을 제공하고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해쳤다. 피고인이 위 게임물 제공을 통해 얻은 수익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 회복하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종전에 2018년경 예비군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 B : 피고인이 미승인 게임물을 제공하고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온라인



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해쳤다. 피고인이 게임물을 직접 변경하여 서버 운영하는 공범에게 제공하거나 직접 제공, 운영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 회복하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 각자의 역할, 기여 정도를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정 \_\_\_\_\_